

**【2014 건축사예비시리즈 건축법규】 1차 정오표 [2014.2.10]**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43	표	9. 허가권자가 인정한 창의적 건축물과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연립주택 제외)	9. 허가권자가 인정한 창의적 건축물과 도시형 생활주택 ( <u>아파트제외</u> )
44	표	가. 공동주택 ㄴ. 높이, 층수, 층별 세대수	가. 공동주택 ㄴ. <u>높이, 층수, 세대수</u>
57	해설 및 정답 해설 16	㉔ 높이, 층수, 층별 세대수	㉔ <u>높이, 층수, 세대수</u>
96	추가	<b>(4) 규제의 재검토</b> <u>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217	(2) 설치기준 추가	<b>9.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일 것</b> <b>10.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피난안전구역 윗층 재실자수×0.5)×0.28m<sup>2</sup> 이상 일 것</b>	
396	3) 시가화유보기간	① 5년이상 20년이하의 기간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① 5년이상 20년이하의 기간으로 <u>지정권자가</u>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404	(3) 의견청취 [표]	시·도지사 시장·군수	<u>1. 시·도지사 공동수립</u> <u>2. 시장·군수 공동수립</u>
	(1) 승인절차 [표]	<u>1. 시장·군수</u> 2. 시·도지사	<u>1. 시장·군수 공동수립</u> <u>2. 시·도지사 공동수립</u>
412	(1) 지형도면의 작성	(2)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력상실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b>삭제</b>
448	문제 58번	㉔ 도시·군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 군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함	㉔ <u>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문제 59번 해설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u>지형도면고시에 대한 작성 기한은 규정되지 않 는다.</u>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505	1. 건축사	건축사란~~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이며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다.	건축사란~~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이며 건축물의 설계와 <b>공사감리 등의</b> 업무를 행하는 자이다.												
	(1) 정의 [표]	<table border="1"> <tr><td>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td></tr> <tr><td>2.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td></tr> <tr><td>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의 기사(伎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td></tr> </table>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의 기사(伎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table border="1"> <tr><td><del>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삭제</del></td></tr> <tr><td>1.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td></tr> <tr><td>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의 기사(伎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td></tr> </table>	<del>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삭제</del>	1.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의 기사(伎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의 기사(伎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del>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삭제</del>															
1.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의 기사(伎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33	3번 해설	<table border="1"> <tr> <td>·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td> <td>건축사사무소 소속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td> </tr> <tr> <td>·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td> <td></td> </tr> <tr> <td>·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td> <td></td> </tr> </table>	·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건축사사무소 소속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table border="1"> <tr> <td><del>·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삭제</del></td> <td>건축사사무소 소속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td> </tr> <tr> <td>·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td> <td></td> </tr> <tr> <td>·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td> <td></td> </tr> </table>	<del>·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삭제</del>	건축사사무소 소속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건축사사무소 소속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del>·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삭제</del>	건축사사무소 소속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572	해설 1	<table border="1"> <tr> <td>지역주택조합</td> <td>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td> </tr> <tr> <td>직장주택조합</td> <td>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td> </tr> <tr> <td>리모델링주택조합</td> <td>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td> </tr> </table>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table border="1"> <tr> <td>1. 지역주택조합</td> <td>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td> </tr> <tr> <td>2. 직장주택조합</td> <td>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td> </tr> <tr> <td>3. 리모델링주택조합</td> <td>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td> </tr> </table>	1.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3.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3.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